

# 대학자체평가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학칙 제17장에 의하여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)** 자체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정의)** 자체평가는 총장이 본 대학교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·평정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4조(주관부서)** 대학자체평가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처로 한다.

**제5조(자체평가위원회 등)** 본 대학교는 자체평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(이하 “기획위원회”라 한다), 자체평가연구위원회(이하 “연구위원회”라 한다), 자체평가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6조(기획위원회의 구성 등)**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은 각 전공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교직원과 외부위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기획위원회의 기능)** ①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
2. 자체평가 영역과 지표에 관한 사항
3.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확정안에 관한 사항
4.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

**제8조(연구위원회의 구성 등)**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되고, 기획조정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평가영역별 전문성 있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9조(연구위원회의 기능)**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지표 개발
2. 자체평가 계획과 평가실시

3.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

4.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위원회와 총장에게 제출

5. 그 밖에 자체평가 연구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0조(평가위원회)** ① 평가위원회는 기획조정처 산하 비상임 조직으로 하고,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전문가와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평가위원회는 대학정보공시제의 공시항목 자료를 조사하여 비교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반 자체평가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제안과 담당영역별 평가 등을 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실무위원회)** ① 자체평가 업무를 위하여 평가 영역별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, 해당 영역별 담당 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위원회는 자체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연구위원회 업무를 보조한다.

**제12조(자체평가 시기)** 자체평가는 2년을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매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대학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연도 자체평가로 같음한다.

**제13조(자체평가의 절차)** ① 각 기관 및 부서장은 자체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각 기관 및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자료를 연구위원회에 송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위원회는 총장이 송부한 자체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평가영역과 평가지표)** 평가영역과 평가지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실시 전에 총장이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평가결과의 활용)**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발전계획 수립,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·연구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**제16조(수당)**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7조(기타사항)**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